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**제 목**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

**관계기관** 발산중학교

**내 용**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(회의소집) 및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, 「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」, 「발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,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.

또한,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고,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,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발산중학교는 금번 학교 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,

(1)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1]의 연번 1과 같이 2021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
(2)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1]의 연번 2와 같이 2022학년도 제1회

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며,

(3)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[표2]의 연번 1~5와 같이 총 5건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각각 1일에서 21일까지 지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있으며,

(4)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에 각 위원 및 위원장, 학교장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아래 [표2]의 연번 3~4와 같이 총 2건의 회의록에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,

(5)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2건(2020학년도 4건, 2021학년도 7건, 2022학년도 2건)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**[표1]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홍보 미실시 및 개최 7일전 통보 미준수 현황**

연번	회기	통보일	개최일	지적사항	비고
1	2021학년도 제2회	2021-06-18	2021-06-25	회의 개최 전 홈페이지 미공개	
2	2022학년도 제1회	2022-04-05	2022-04-08	회의 개최 3일전 통보	

**[표2]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지연 및 서명 누락 현황**

연번	회기	개최일	홈페이지 공개일	지연 일수	비고
1	2020학년도 제6회	2021-02-08	2021-02-28	13일	
2	2021학년도 제3회	2021-07-14	2021-07-27	6일	
3	2021학년도 제6회	2021-12-16	2022-01-14	22일	회의록 서명 누락
4	2021학년도 제7회	2022-02-16	2022-02-24	1일	회의록 서명 누락
5	2022학년도 제1회	2022-04-08	2022-04-21	6일	

**【조치할 사항】**

- ① 발산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2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